

## 개호보험료의 경감에 관하여

-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대상자이면서 생활이 곤경에 처한 분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감액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므로, 거주지의 구청의 개호보험 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.

### 대상자

-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의 비과세 대상자로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분 (생활보호 수급자는 제외)

①세대의 연간수입이 다음의 금액 이하이다.

②부양을 받고 있지 않다.

③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.

- 예저금, 국채 등은 1인 세대에서 350만엔(세대 인원이 1인 증가할 때마다 100만엔 가산)을 초과하지 않을 것.
- 세대 단위에서 본인의 거주용 이외에 처분이 가능한 토지 또는 가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.

④개호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다.

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
|-------|-------|-------|
| 150만엔 | 198만엔 | 246만엔 |

(이후, 세대 인원이 1인 증가할 때마다 48만엔이 가산된 금액)

※연간수입에 대해서는 유족연금, 장애연금 등의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. 또한, 개호보험료와 개호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
### 경감 내용

제4등급 보험료 (연간 금액 60,822엔) 의 2분의 1로 경감됩니다.

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.

- 아래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●지진재해, 풍수해,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해 주택, 가재도구 등에 현저한 손해를 입은 분(면제)

●사망, 중대한 심신장애 또는 장기간 입원, 사업 또는 업무의 휴폐지, 사업에서의 현저한 손실,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분(경감)

##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기 시작하나요?

보험료는 65세 생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합니다.

예

2015년 6월 2일~7월 1일 사이에 65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분에게는 6월분부터의 보험료를 7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의 9개월간을 균등하게 나누어, 각 달에 발생하는 100엔 미만의 끝수를 7월분의 보험료에 추가한 납부서를 7월 중순에 보내드립니다.

지불해주신 개호보험료는 소득세와 시부민세의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이 됩니다.